

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 『 주택청약예금 』 특약(구 외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기본적용약관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적용범위 주택청약예금(구 외환은행)(이하 " 이 예금" 이라 한다)거래에는 이 특약과 「<u>예금거래기본약관</u>」(구 외환은행), 「<u>거치식예금약관</u>」(구 외환은행), 「<u>주택법</u>」 및 「<u>주택공급에관한 규칙</u>」을 적용한다.</p> <p>· 제2조 ~ 제10조 (생략)</p>	<p>제1조 적용범위 주택청약예금(구 외환은행)(이하 " 이 예금" 이라 한다)거래에는 이 특약과 「<u>예금거래기본약관</u>」, 「<u>거치식예금약관</u>」, 「<u>주택법</u>」 및 「<u>주택공급에관한 규칙</u>」을 적용한다.</p> <p>제2조 ~ 제10조 (좌동)</p>	기본적용 약관변경

「주택청약예금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제1조 약관의 적용

주택청약예금(구 외환은행)(이하 " 이 예금" 이라 한다)거래에는 이 특약과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 「거치식예금약관」,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한다.

제2조 거래대상

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주택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한다. 다만, 미성년인 자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규칙」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.

제3조 가입제한

이 예금과 주택청약부금, 주택청약저축,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.

제4조 예치금액

이 예금의 예치금액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각 지역별, 평형별 해당금액으로 한다.

제5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제6조 재예치

- ① 계약기간내에 민영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계좌는 주택청약자격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만기일에 기존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원금만을 1년 단위로 자동회전 예치하는 것으로 한다.
- ② 압류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재예치 할 수 없다.
- ③ 재예치시에는 재예치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약정금리를 적용한다.

제7조 특별중도해지

이 예금은 예입(또는 재예치)후 1개월이 경과하고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약정금리를 적용한다.

- 1. 당첨후 해지하는 경우
- 2. 예치금액 변경(평형변경, 지역변경)으로 인한 해지하는 경우
- 3.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 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

제8조 명의변경

이 예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.

- 1. 가입자 사망에 의한 상속
- 2. 가입자의 개명

제9조 계좌부활

이 예금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부활시킬 수 있다.

제10조 기타

- ① 이 예금은 분할해지 할 수 없다.
- ② 이 예금은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을 설정 할 수 없다.

부칙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